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19 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조정식・민병덕・이병진

정성호 · 김성환 · 김재원

염태영 · 노종면 · 용혜인

이해식 · 정을호 · 한정애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.

최근,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,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

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35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중 "사고 시의 조치"를 "사고 시의 조치, 영상기록장치의 설치"로, "제16조(제1항은 제외한다) 및 제19조(제1항은 제외한다)를"을 "제16조(제1항은 제외한다), 제19조(제1항은 제외한다) 및 제27조의3을"로 한다.

제85조제1항제23호의2 중 "제27조의3제1항"을 "제27조의3제1항(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3호의3 중 "제27조의3제7항"을 "제27조의3제7항(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91조제2호 중 "제27조의3제3항"을 "제27조의3제3항(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27조의3제4항"을 "제27조의3제4항(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제27조의3제6항"을 "제27조의3제6항(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준용 규정) 자동차대여사	제35조(준용 규정)
업의 사업계획 변경, 사업계획	
의 변경제한, 공동운수협정, 명	
의이용 금지, 사업의 양도・양	
수 및 법인의 합병, 상속, 사업	
의 휴업·폐업, <u>사고 시의 조치</u>	<u>사고 시의 조치,</u>
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	영상기록장치의 설치
터 제6항까지, 제11조, 제12조,	
제14조(제2항은 제외한다), 제1	
5조, 제16조(제1항은 제외한다)	제16조(제1항은 제외한다), 제19
및 제19조(제1항은 제외한다)를	조(제1항은 제외한다) 및 제27
준용한다.	<u>조의3을</u>
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 국토교통	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
부장관, 시·도지사(터미널사업	
•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	
업에 한정한다) 또는 시장・군	
수・구청장(터미널사업에 한정	
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	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면 면허·허가·인가	
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	

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·제 8호·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 에는 면허,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23. (생략)
- 23의2. <u>제27조의3제1항</u>을 위반 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
- 23의3. <u>제27조의3제7항</u>을 위반 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

24. ~ 41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- 제9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<u>제27조의3제3항</u>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

1. ~ 23. (현행과 같음)
23의2. <u>제27조의3제1항(제35조</u>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<u>다)</u>
23의3. <u>제27조의3제7항(제35조</u>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)
24. ~ 4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1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2. 제27조의3제3항(제35조에서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,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

- 3. <u>제27조의3제4항</u>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한 자
- 4.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 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・ 도난・유출・변조 또는 훼손 당한 자

5. ~ 7. (생략)

3.	제27조의3제4항(제35조에서
<u> 건</u>	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4.	제27조의3제6항(제35조에서
<u>건</u>	<u>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
	_

5. ~ 7. (현행과 같음)